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1년 6월 29일

국무총리 김부겸

국무위원
환경부장관 한정애

●대통령령 제31849호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)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“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
1. 기상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상근(常勤) 연구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는 것. 이 경우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 기상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2.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시설을 갖추는 것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자료 제출)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1.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수요자에게 제공한 기상예보·기상관측 자료 등 기상정보에 관한 자료
2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등록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.

별표 1의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사무실의 경우 둘 이상의 기상사업자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·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기상산업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17839호, 2021. 1. 5. 공포, 7. 6. 시행)됨에 따라, 기상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·단체 및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연구 인력·시설의 요건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시설 등으로 정하는 한편,

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기상사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둘 이상의 기상사

업자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